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,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업무의 위탁)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

별표1 제목 중 “제32조 관련”을 “제33조 관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의결주문

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과 학교 업무가 산림청 고시*에 근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바, 본 업무의 수행 근거를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과 학교의 운영상 비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- 산림청 고시 : 탄소흡수원 특성과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

3. 주요내용

가. 탄소흡수원 특성과 학교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(안 제31조의3 신설)

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과 학교 업무를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

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3조 관련)

- 일반기준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2) 위반행위자가 범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		100	300	500
가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, 기피,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1호			
나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,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2호	100	300	500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2조(업무의 위탁)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
제32조 (생 략)	제33조 (현행 제32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37